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7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

발 의 자: 박덕흠 · 김선교 · 구자근

강승규 • 신성범 • 정희용

김정재 • 이종배 • 권영진

고동진 · 김예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중앙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매시장법 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의 재지정 요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,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.

이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으며,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16년간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

적됨.

이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고, 이를 지정할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,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취소하도록하여 독과점이 고착한 도매시장 법인을 공정한 경쟁 형태로 유도하고자 함(안 제23조 및 제82조).

또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관련 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32조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23조의 제목 "(도매시장법인의 지정)"을 "(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지정하되"를 "공모의 방식으로 지정하되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6항) 중 "지정절차와"를 "지정 및 재지정 절차와"로, "지정에 필요한"을 "필요한"으로 한다.

-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. 단,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 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지정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할 때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, 농업인 권익보호, 농수산물 도매유통

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전 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. 법인별 채용규모, 전담인력의 자격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82조제3항 중 "보호에"를 "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"로, "취소할 수 있으며"를 "취소하여야 하며"로, "취소할 수 있다"를 "취소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, 개설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신규로 지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3조(도매시장법인의 지정) ① | 제23조(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|
|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 | <u> 재지정</u>) ① |
| 자가 부류별로 <u>지정하되,</u> 중앙 | <u>공</u> 모의 방식으로 |
| 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 | <u>지정하되,</u> |
| 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| |
|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 | |
| 의하여 지정한다. 이 경우 5년 | |
|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 | |
| 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 | |
| | , |
| ② ~ ⑤ (생 략) |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 |
| | 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 |
| | 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 |
| | 정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도 |
| | 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 |
| | <u>청을 하여야 한다.</u> |
| <u><신 설></u> | 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3년 이 |
| | <u>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항</u> |
| | 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. |
| | 단,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|
| |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 하고자 |
| |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|
| |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지정 |
| |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. |

<신 설>

⑥ 도매시장법인의 <u>지정절차와</u> 그 밖에 <u>지정에 필요한</u>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매매방법) (생략)

<신 설>

- 제82조(허가 취소 등) ①·② (생략)
 -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
-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할 때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, 농업인 권익보호, 농수산 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 요한 지정조건을 붙일수 있다. ⑨ ----- 지정 및 재지정 절차와 ----- 필요 한 ----. 제32조(매매방법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 다. 법인별 채용규모, 전담인력 의 자격 등 정가매매 또는 수 의매매 전담인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제82조(허가 취소 등) ①・② (현 행과 같음)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

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<u>취소할 수 있으며</u>, 시·도지사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승인을 <u>취소할 수 있다.</u>

④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 _____

----- 취소하여야 하며,

---- 취소하여야 한다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8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, 개설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신규로 지정할 수있다.